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호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 . .<br>(제회) |      |

선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해양수산부장관) |
| 제출연월일 | 2024 . . 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「선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20127호, 2024. 1. 23 공포, 2024. 7. 24. 시행)됨에 따라 재해보상 지급 제한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가. 양육책임 불이행 관련 재해보상 지급 제한 규정 신설(안 제31조의2, 안 별표 1의2)

- 신청 주체(선박소유자→지방청장), 신청 절차(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), 보상 제한 여부 결정(해수부장관) 및 판단사항 등을 규정
  - (선박소유자) 관련서류\*를 첨부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심의 신청, 해양항만관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·지급
    - \* 재해 보상 제한 신청서 +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,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, 보상제한심의 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
  - (해양항만관청) <sup>지방청장</sup> 관련서류 접수, 사실관계 확인·조사 → <sup>해수부장관</sup> 판단사항(별표 1의2)을 고려하여 보상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심의·결정
- 재해보상 지급 제한 결정에 대한 자문 규정 신설(안 제31조의3)
  -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

#### 나. 일부 선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(안 별표 2)

- 선원법 제179조제3항(200만원 이하 과태료) 정비 대상\*에 대해 1차 위반시 100만원(50% 적용), 2차 150만원(75%), 3차 200만원(100%) 부과
- 다만, 해외취업 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동 시행령상 유사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고려, 1차 60만원(30% 적용), 2차 120만원(60%), 3차 200만원(100%) 부과

\* 6의2. 제44조의2 위반,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원 혹은 선원관리사업자  
6의4.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
6의5.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
13의2. 제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,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3. 00. ~ 05. 00.)

##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재해보상 지급의 제한) 제31조의2(재해보상 지급의 제한) ①

법 제10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(이하 “보상제한심의대상자”라 한다)에 대해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보상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

1. 재해를 입은 선원의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2.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3. 보상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

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보상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·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으면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상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상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선박소유자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.

⑤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그 결정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보상제한심의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 보상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.

1. 보상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: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,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

2. 보상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: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,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

⑥ 재해를 입은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제31조의3(자문위원회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의2]

재해를 입은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(제31조의2제4항 관련)

| 대상자 | 판단 시 고려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부모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선원이 미성년이었던 기간(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,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</li> <li>2. 선원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</li> <li>3. 선원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재해를 입은 선원에 대해 범죄행위,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</li> </ol> |

[별표 2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5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| 근거<br>법조문 | 과태료(단위: 만원) |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|           | 1차<br>위반    | 2차<br>위반 | 3차 이상<br>위반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가. 법 제12조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 제1호 | 100 | 150 | 200 |
| 나. 법 제14조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 제1호 | 100 | 150 | 200 |
| 다. 선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| 250 | 375 | 500 |
| 라. 선장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2항 제2호 | 250 | 375 | 500 |
| 마. 선장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2항 제3호 | 250 | 375 | 500 |
| 바.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 제1호 | 60  | 120 | 200 |
| 사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 제3호 | 60  | 120 | 200 |
| 아. 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 제4호 | 100 | 150 | 200 |
| 자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 제5호 | 60  | 120 | 200 |
| 차.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친족인 근로자(선박소유자의 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,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,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가 법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| 법 제179조 제1항     |     |     |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) 선박소유자가 한 사람에게 수 차례 선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) 선박소유자가 그 밖의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) 선박소유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카. 선박소유자가 법 제2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 | 법 제179조 제2항제3호의2 |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타. 선박소유자가 법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2항제3호의2 |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파. 선박소유자가 법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| 법 제179조 제2항제3호의2 |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하. 법 제25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 | 법 제179조 제2항제3호의2 |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거.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 법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| 법 제179조 제3항제5호의2 | 100만원<br>한도에서<br>통지하지<br>않은 선박<br>1척당<br>1만원 | 150만원<br>한도에서<br>통지하지<br>않은 선박<br>1척당<br>2만원 | 200만원<br>한도에서<br>통지하지<br>않은 선박<br>1척당<br>4만원 |
| 너.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선·하선 교대가 있을 때 마다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제6호   |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선원의 성명을 적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더.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제6호    | 60  | 120 | 200 |
| 러.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원 혹은 선원관리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 179 조제3항제6 의2 | 60  | 120 | 200 |
| 머. 선박소유자가 법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제6호 의3 | 200 | 200 | 200 |
| 버.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제6의 4  | 100 | 150 | 200 |
| 서.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제6의 5  | 100 | 150 | 200 |
| 어. 선박소유자가 법 제58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4항제1호    | 30  | 60  | 100 |
| 저. 선박소유자가 법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,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179조 제3항제7호    | 60  | 120 | 200 |
| 처. 선박소유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2항제4호    | 250 | 375 | 500 |
| 커. 선장이 법 제7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차별 급식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제9호    | 60  | 120 | 200 |
| 터. 선박소유자가 법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 해양항만관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제10호   | 100 | 150 | 200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퍼. 선박소유자가 법 제82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제11호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허. 선박소유자가 법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2항제5호    | 2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.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복을 입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4항제2호    |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노. 선박소유자가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갖지 않은 사람을 선원으로 승무시킨 경우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제12호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도.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법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| 법 제179조 제3항제12호의2 | 100만원<br>한도에서<br>통지하지<br>않은 선박<br>1척당<br>1만원 | 150만원<br>한도에서<br>통지하지<br>않은 선박<br>1척당<br>2만원 | 200만원<br>한도에서<br>통지하지<br>않은 선박<br>1척당<br>4만원 |
| 로. 법 제10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에 승무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제2호    |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모.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인등록을 하지 않고 선원을 고용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제2호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.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관리사업의 위탁사실과 내용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제13호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. 법 제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,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제13호의2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오.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제14호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조.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·기피·방해한 경우,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 진술을 한 경우 | 법 제179조 제3항제15호 | 100 | 150 | 200 |
| 초. 선원이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2항제6호  | 250 | 375 | 500 |
| 코. 선박소유자가 법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제16호 | 100 | 150 | 200 |
| 토. 법 제15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에 갖추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79조 제3항제2호  | 100 | 150 | 200 |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p><u>제31조의2(재해보상 지급의 제한)</u></p> <p><u>제31조의2(재해보상 지급의 제한) ① 법 제10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(이하 “보상제한심의대상자”라 한다)에 대해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보상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재해를 입은 선원의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</u></li> <li><u>2.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</u></li> <li><u>3. 보상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 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</u></li> </ol> <p><u>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보상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·조사</u></p> |

한 후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 
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해  
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 
따라 신청서 등을 받으면 첨부  
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상제한  
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 
따라 보상제한 여부와 감액비율  
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선박  
소유자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  
게 보내야 한다.

⑤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 
그 결정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 
보상제한심의대상자에게 보상  
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. 이 경  
우 보상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  
급하지 않은 보상금은 다음 각  
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.

1. 보상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 
순위자가 있는 경우: 같은 순  
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 
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, 여  
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  
누어 지급

2. 보상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

<신 설>

순위자가 없는 경우: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,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

⑥ 재해를 입은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제31조의3(자문위원회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| (044) 200 - 5743 |